과테말라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5. 10.

국 세 청

“ 파랑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하양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다. 문장은 자유의 상징인 국조(國鳥) 케트살(Quetzal)로 이루어졌고, 중앙의 두루마리에는 'LIBERTAD, 15 DE, SETIEMBRE, DE 1821(1821년 9월 15일 자유)'라고 씌어 있다. 2개의 월계수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 ”

과테말라 개관 ····· 03

투자절차 및 투자촉진제도 ···· 06

조 세 체 계 ····· 10

유 관 기 관 ····· 19

과테말라 개관

일반사항

국　　명 : the Republic of Guatemala

위　　치 : 중미 (멕시코 밑)

기　　후 : 해안은 열대(25-33℃), 고지는 온대기후 (12-25℃)

면　　적 : 108,889㎢ (한반도의 1/2)

인　　구 : 1,300만명 ('04년)

수　　도 : 과테말라 (Guatemala City, 113만명, '04)

주요도시 : 에스꾸인뜨라 (Escuintla), 켓살떼낭고 (Quetzaltenango)

주요민족 : 인디오 50%, 라디노 40%, 백인 5%

주요언어 : 스페인어, 마야어

종　　교 : 카톨릭 70%, 기독교 30%

정 치

국가성립 : 스페인으로부터 1821년 9월 15일 독립

정 체 :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대 통 령 : Oscar Berger Perdomo (2004.1월 취임)

의 회 : 단원제(158석)

주요정당 : 과테말라 공화당(FRG),민족진보당(PAN), 신국민연합(ANN)

가입국제기구 : UN, OAS, IFC, IMF, ICAO, IDB, IBRD, ILO, WTO, IDA, IAEA

특기사항 : '85. 3 총선에 의해 민정이양

경 제

GDP(1인당) : 269억달러(2,118달러) ('04)

화 폐 단 위 : 께찰 Quetzal(Q), 1USD=7.75Q('04)

주 요 자 원 : 석유, 동, 니켈, 목재

회 계 연 도 : 1. 1 ~ 12. 31

산 업 구 조 : 농수산업 22.7%, 상업 24.8%, 제조업 12.8%('03)

주요수출품 : 커피, 설탕, 바나나, 석유

주요수입품 : 원 · 부자재,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경제개발계획 : 경제구조조정책 시행중

경제적강점 : 농수자원 풍부, CBI(카리브해지역 특혜관세제도) 수혜국,
미국과 FTA 체결

경제적약점 : 기술인력 및 자본부족

국제적신인도 Moody's : Ba2('97.8), S&P : BB–('03.5), OECD : 6등급('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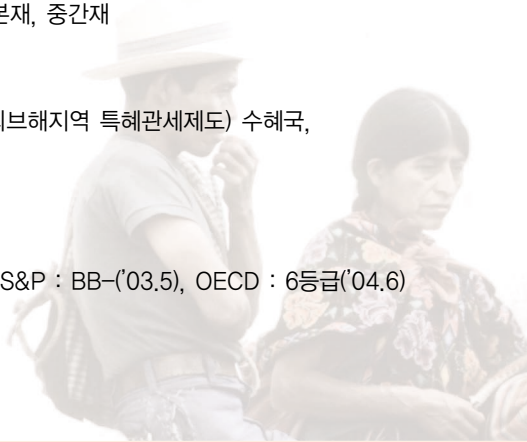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 '62. 10. 24　　북한과는 미수교

주 요 협 정

무역협정('77), 문화협정('78), 무역통상협정('97), 투자보장협정('00), 범죄인도협정('03), 외교관 · 관용사증면제각서('03)

무 역 현 황 ('04)

- 수출 550백만달러 : 섬유류, 자동차, 전기제품
- 수입　62백만달러 : 커피, 사탕수수

투 자 실 적 : 58건 54백만달러('04말 현재 순투자)

교　　민 : 8천여 명, 대부분 현지진출 봉제공장 종사자

시　　차 : 15시간

투자절차 및 투자촉진제도

1. 투자절차

상업등기소 등록

–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 임시법인과 영구법인 두가지 진출형태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등기신청서
- 모기업 설립증명서, 지점설치 의향서
- 과테말라 내에 자본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증빙
- 상업등기소 5만불 예치증명서
- 과테말라 법적 의무이행 서약서

납세자번호 취득

– 재무부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상업등기소 법인등록증
- 대표자 임명증명서
- 모기업의 설립등기서류

외환취급을 위한 수출입허가

– 중앙은행 국제외환부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상업등기소 법인등록증

• 대표자 임명증명서

• 대표자의 신분증

2. 투자촉진제도

개 요

– 2004년 1월 출범한 신정부는 국가수출촉진위원회를 (NCEP) 활성화하여 수출, 관광 및 투자를 촉진 · 확대 중입니다.

– 국립경제연구센터(the National Economic Research Centre)가 감면 등 일반 조세지원정책을 총괄합니다.

산업분야별

– 신 · 재생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법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 재생 에너지자원 및 채광에 대한 국내외 투자 촉진 목적

• 기계 · 장비 수입세(import duties)면제, 투자원금 상당액 소득세 100%까지 공제, 10년간 소득세 면제 ('03 신설) 수력전기(hydroelectric)에 사용되는 자본재 수입세를 면제합니다.

– 석유산업

탐사 및 시추 비용 100%보전, 투자자는 대부분의 자재에 대해 5년간 수입세 면제, 재수출 품목에 대해 조세 유예됩니다.

– 탄화수소유기화합물

탐사 및 개발비용 100% 손금산입하고, 투자자는 특정 품목에 대해 5년간 수입세 면제,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 조세 유예, 채광은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임업촉진 프로그램(Forestry Incentives Programme)

5년간 현금지원합니다 : 첫해 Q5,000, 둘째해 Q2,100, 셋째해 Q1,800, 넷째해 Q1,400, 다섯째해 Q1,300

– 관광법 (the Tourism Law)

- 투자자는 10년간 과테말라 국내에서 또는 중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건설재, 기계, 전기장치, 차량운반구, 선박, 가구 등에 대한 모든 조세 및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신축 · 증축 부동산에 대해 면세됩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 산업지방분산법(The Industrial Decentralisation Law)

- 주요 면세산업지구(duty-free industrial parks)
  ① Santo Tomas de Castilla on the Pacific coast
  ② lazbal on the Caribbean
- 수출입세 면제, 지방세 면제, 정부가 승인한 경우 12년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수출산업 조세특례

– 취약산업지원법 (The Drawback Industries Law)

- 수출하는 제조업자 대상
- 1년간 수입 기계 · 투입자재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투자자에게 10년간 소득세 면제
- 단일 기업 단독으로 전국 모든 희망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 FTZ) 지정 가능

– 자유무역지대법 (The Free-Trade Zones Law)

개인 또는 기업이 수출, 재수출 재화를 제조 판매하거나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 특별 지정지역입니다.

FTZ내의 제조 및 산업서비스 기업

- 장비, 기계, 공구, 원자재, 부자재, 반제품, 컨테이너 수입 및 포장서비스에 대해 면세
- FTZ에서 발생한 제조, 서비스 소득에 대해 12년간 소득세 면세
- FTZ구역간 이동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

FTZ내 상사(commercial) 회사

- FTZ에 적재되어 있는 상품 관련 관세, 수입수수료 (import charges), 국세(taxes) 면세
- FTZ에서 발생한 상업(commercial activities)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면세
- FTZ구역내 · 간 이동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 세 체 계

기업(법인)세 Corporate Taxes

1. 개 요

– 2004. 1. 14 취임한 Oscar Berger 대통령은 강도 높게 긴축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신정부는 2004년 5월 신 재정정책을 상정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 신 재정정책 목표는 조세구조 단순화, GDP의 12%까지 세수증대입니다.

– 신 재정정책은 2004년 1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시킨 「상업 · 농업에 관한 조세」(IEMA)를 대신해서 2007년까지 유효한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특별세」(IETAAP)를 제정했습니다. IETAAP는 상업기업과 농업기업(commercial and agricultural companies)이 부담합니다. 세율은 2004년 2.5%, 2005년 1.25%, 2006년과 2007년에는 1%입니다.

– 술과 원유 ·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 세무당국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tion Tribuaria : SAT).

– 밀수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6월 세무당국(SAT)은 국경지역세관과 국제적 기업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22명으로 구성된 전문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법인세율

- 2004. 7. 1부터 납세자는 두 개의 소득세 체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 ① 순소득의 31%를 납부(이하 순소득법).
  - ② 총수입의 5%를 매월 납부하고 주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며, IETAAP 세금을 부담하지 않음.(이하 총수익금액법)
- 2001년 초부터 31%(2000년 이전 25%)
- 지점이윤에 대한 세율도 동일합니다.
-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그 소득으로인한 해외 송금배당은 면세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10% 원천징수합니다.
- 신규 기업에게 영업개시 5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던 것과 이윤재투자에 대하여 5%까지 손금 인정해주던 것을 2004년 7월 개정세법에서 폐지했습니다.
- 양도차익은 10%로 과세합니다.

3. 과세소득금액

-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기업 및 개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해야 합니다.
- 자본, 자산, 서비스, 권리, 기타 국내활동으로부터의 수입 등이 과세소득입니다.
- 세무당국은 연속 2년 이상 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은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총소득에 대한 손금 외에, 아래의 손금을 인정합니다.
  - 총소득의 1% 미만이거나, 과테말라 국민에게 지급되는 총급여의 15% 미만인 기술용역료(technical service fee).

• 순판매액의 10% 미만이거나, 총소득의 5%미만인 사용료

위 두 손금처리는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y)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당금 한도는 부실채권의 3%, 급여의 8.33%입니다.

– 비인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법에서는 신규기업은 영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손실을 1년 동안 이월할 수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폐지했으며,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한 기업만이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 원칙은 정액법이고,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감가상각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 감가상각 한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 Buildings ····· 5%
- 나무 및 식물 등 Trees and vegetable species ····· 15%
- 기계, 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Machinery, Equipment, Furniture, Fixtures,Vehicles ····· 20%
- 공구, 컴퓨터 Tools, Compute and software ····· 33%
- 기타 재화 other depreciable assets ····· 10%

5. 납세일정

- 분기별로 예납합니다.
- 예납세액 계산은 1/4분기의 순이익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 표준 회계연도는 1. 1. ~ 12. 31이고, 승인을 받아 다른 회계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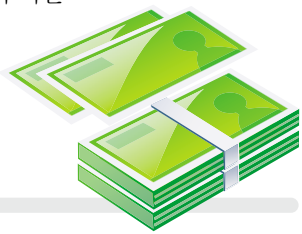

6. 자본세(Capital Taxes)

- 순소득법을 사용하는 내국기업은 「평화협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특별세(IETAAP)」를 부담합니다.
- IETAAP는 순자산의 1/4, 총소득의 1/4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 세율은 2005년에는 1.25%, 2006~7년에는 1%입니다.
- IETAAP는 분기로 나누어 신고 납부하며, 향후 3년 안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하여 총수익금액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5%, 순소득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31% 세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손실은 양도차익과만 상계합니다 .
- 자본차익(Gains on Capital assets)은 소득으로 취급하며 10%세율로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10%세율로 과세됩니다.

7. 배당에 대한 과세

– 소득세를 기납부한 해외송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8. 이자에 대한 과세

– 해외로 송금하는 이자에 대해서 10% 원천징수합니다.

9.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과세

– 경제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료는 순매출의 10%까지 공제(손금)가능합니다. (총소득의 5% 한도)

10. 조세조약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타국가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11. 기업간 사용료 등

– 기업간 지불에 대한 손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료(royalties) : 총소득의 5%

기술지원 수수료(technical-assistance fees) : 총소득의 1%와 과테말라 국민에 지급되는 총급여의 15% 중 큰 금액

– 관계사간의 환차손(exchange losses)은 손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 부가가치세 세율은 12%입니다.
- 과세대상은 주로 동산의 판매, 동 자산에 대한 권리, 서비스 제공, 수입재화 및 부동산 판매 등입니다.
- 2000년부터 관세를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 의회는 2001년 8월 10%에서 12%로 높여 예산 적자를 줄이고, IMF의 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품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2004년 6월 말 세제개혁 때 알콜 음료, 맥주 및 와인 소비세를 제품가의 5% 추가, 알코올 1도수 당 Q0.05씩 올렸습니다.
- 담배, 유류 및 신차에도 소비세 적용됩니다.
- 관광관련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12%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소득)세 Personal Taxes

1. 거주자

–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2. 과세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 · 손실은 경상소득으로 취급합니다.

– 납세자당 인적공제액은 Q36,000입니다.

– 보험료, 전문용역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로 공제합니다.

– 영수증이 있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총소득의 7%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2004년 7월 1일 시행한 세제개혁안에서 몇가지 세금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전문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7%로 과세합니다.

3. 자본세

– 개인의 자본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4. 개인소득세율

- 과테말라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든 어디에서 송금하든 관계없이 비거주자 소득에 포함됩니다.

2005년 개인 소득세율

과세표준	전단계 세액 추가(Q)	세율(%)
0 ~ 65,000	·	15
65,001 ~ 180,000	9,750	20
180,001 ~ 295,000	32,750	25
295,001 ~	61,500	31

※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Q 200,000이라면

(Q 200,000 − Q 180,000) × 0.25 + Q 32,750 = Q 37,750

기타 주요 조세

1. 사회보장기여금

– 기업은 총급여의 12.67%를, 근로자는 4.83%를 매월 납부합니다.

2. 부동산세 real estates tax

– 건물 및 기계 포함합니다.

– 세율구조

Q 2,000	~	Q 20,000	0.3%
Q 20,000	~	Q 70,000	0.6%
Q 70,000	~		0.9%

– 2000년부터 모기지에 의한 주택구입에 3% 과세하고, 현금 구매 시에는 면세됩니다.

3. 인지세

– 모든 민사 · 상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3% 과세합니다.

– 상업송장, 수입문서 등은 면세됩니다.

유 관 기 관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Add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호텔 614호 100-635
Tel : 02) 771-7582/3 | Fax : 02) 771-7584
E-mail : embassy@guatemala.or.kr
http://www.guatemala.or.kr/

과테말라국세청
http://portal.sat.gob.gt/portal/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Add : 5 Avenida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Tel : (502) 2353-0251 ~ 0256 | Fax : (502) 2353-0257
E-mail : korembsy@mofat.go.kr
http://www.mofat.go.kr/ek/ek_a002/ek_gtgt/ek_01.jsp

주과테말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Add : 13 calle 3-40, Zona10 Edificio Atlantis 6 Nivel 605호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C.A
Tel : (502) 2367-2347/8 | Fax : (502) 2367-2350
E-mail : kotra@newcomgua.com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 : (02) 397-1452~4

국세청

www.nts.go.kr